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5 선고 2020가단1174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9. 17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5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,633,594원과 그 중 41,772,598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21. 5. 12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근 거

가. 피고 1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2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미리

별지